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43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3년 9월 14일
제안자 : 운영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의회 청렴성 강화를 위해 의원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를 전액 지급 제한함.

2. 수정의 주요내용

-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그 기간 동안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.(안 제6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비대상
- 기타사항 : 「수정안조문대비표」 참조.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6조제2항 중 “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,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” 를 “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,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” 로 한다.

수정안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<u>여비를</u>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 의원이 「지방자치법」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동안 의정활동비 및 <u>여비를</u>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3조</u> ----- ----- ----- 월 <u>정수당을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출석정지 기</u> <u>간에 해당하는</u> --- ----- ----- ----- 월정수당 <u>의 2분의 1을 감액</u> <u>하고, 여비는 지급</u> <u>하지 아니한다.</u></p>	<p>제6조(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) ①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출석정지 기</u> <u>간에 해당하는</u> --- ----- ----- ----- <u>여비를 지</u> <u>급하지 아니하고,</u> <u>월정수당은 2분의 1</u> <u>을 감액한다.</u>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와 <u>여비</u>를 소급하여 지급한다.</p>	<p>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월정수당, 여비</u> -----.</p>	<p>③ (개정안과 같음)</p>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제4조의 규정”을 “제3조”로, “여비를”을 “월정수당을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기에 불출석한 기간 동안”을 “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”으로, “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, 월정수당은 2분의 1을 감액한다”로 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여비”를 “월정수당, 여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